

『공유재산(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) 사용료 감면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7월 9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7월 17일

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박 수 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'15.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,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내 「대경거점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음.
- 구축된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인프라와 (사)3D프린팅산업협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개발, 시제품 제작지원, 3D프린팅 전문가 육성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.
- 이에 구축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도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로서 원활한

역할수행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
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- 사용주체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- 감면기간 : '20. 7. 1. ~ '25. 6. 30. (5년)
- 사용면적 : 696.5㎡(1층 507.5㎡, 2층 189㎡, 9개호실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3조, 제17조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개요
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- 규 모 : 3,882.9㎡, 지상1층 ~ 4층(총 29개호실 임대가능)
- 건 립 비 : 35.7억원(도11, 시 24.7) ※ 준공일 : '16. 2. 29
- 사업내용 : 3D프린팅 센터구축, 연구개발, 기업지원, 인력양성 등
- 운영방법
 - 건물 운영 및 관리: 구미시(신산업정책과) 직접운영
 -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운영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수행기관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○ 본 「공유재산(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) 사용료 감면 동의안」 은,

-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, 구축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인프라로 3D프린팅 전문가 육성, 제품개발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금오테크노밸리 내 건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,
-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연간 사용료 3천1백만원이라는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,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3D프린팅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며 전문가를 육성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